# 22/23시즌 리프트 시즌권 약관

# 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지산리조트㈜(이하 '사업자'로 합니다)가 판매하는 2022/2023시즌 리프트 시즌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자(이하 '이용자'라 합니다)의 권리 와 의무 및 이용절차 등 기타 필요 사항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# 제2조 (정의)

- 가. 시즌권은 회원권이 아니며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를 위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리프트에 국한된 특별 할인상품입니다.
- 나. 본 시즌권으로 눈썰매장 이용은 불가 합니다.
- 다.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입니다.

# 제3조 (사용기간 및 적용)

가. 시즌권의 사용기간은 하기(①,②)와 같이 구분되며 서비스 기간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간입니다.

① 기본사용기간 - 전일권 : 개장일로부터 60일

② 서비스기간 - 전일권 : 60일 이후 ~ 폐장일

#### 나, 권종 이용가능 시간

구분	전일권
적용	시즌중
	전체시간대
	단, 기후여건에 따라 심야 운영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정설시간 제외
	심야운영시기 : 12월20일 전후 ~ 2월중순경 예정 운영 (기후 여건에따라 변경 가능)

- ※ 회원 시즌권 리프트 탑승 라인 별도 운영(일반 시즌권 입장 불가)
- 다. 2022/2023시즌의 시즌권 유효기간 중,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천재지변, 기상 여건(강풍, 우박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발생), 사회재난, 정부의 지침 (전염병, 감염병 등 관련 명령, 집합 금지, 이용제한, 시설 폐쇄 등), 리프트 정비, 보강 제설, 이상기온으로 인한 임시휴업, 국내외 스키 관련 대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,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"이용자"는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라.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등으로 이용객을 고려하여 슬로프와 리프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에 일부 슬로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"이용자"는 해당 사유로 인한 이의를 사업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※ 특히 2월부터는 상시 슬로프와 리프트 운영을 이용 제한 될수 있습니다.

#### 제4조 (이용자의 자격 의무 및 시즌권 관리 발급)

- 가. 이용자는 시즌권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주어지며 리프트 탑승시 항시 시즌권을 지참하고 있어야합니다.
  - ( 좌측 상단쪽으로 배치하여 게이트 통과시 인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. )
- 나.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으로 당사에 등록된 본인외 제3자의 이용은 불가하며 적발 즉시 압수되고 시즌권 효력이 상실 됩니다.
- 다. 시즌권 이용자는 본인 사진과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헬멧 또는 고글, 마스크 등의 탈착을 검표요원이 요구할수 있으며, 본인 확인 절차에 불응 시 스키장 이용불가 합니다.
- 라. 시즌권 분실, 도난, 파손시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않을경우 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. 당일 스키장 이용을 위해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마. 시즌권 미소지시 리프트권은 별도로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바. 상품 이용요금을 납부하신 후 이미지파일(ipq)을 규격에 맞추어 1주일 이내에 등재시켜야 합니다.
  - 이미지 규격: 어깨이상이며,썬글라스,고글,모자, 마스크 등을 탈의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한 이미지. (세로 5cm X 7cm, 200 dpi 이상, 300KB ~ 1MB이하 사진)
  -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 사진을 등록해야 시즌권 발급이 됩니다. ( 눌림사진 및 스티커, 어플, 측면사진 불가 )
  - 규정 미달 사진 제출 시 에는 시즌권 제작 불가 합니다.
- 사. 유효 기간은 2022년 스키장 개장일로 부터 2023년 폐장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 경과시 만료처리 됩니다.

#### 제5조 (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)

- 가.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(구매자) 또는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귀속됩니다.
- 나. 시즌권을 분실 하거나 도난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당사 시즌권 담당처에 지체없이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, 분실 신고 이전에 부정 사용으로 인하여 회수된 시즌권은 회수, 말소(폐기) 처리 됩니다.
- 다. 기타 부정하게 사용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될 뿐만 아니라 벌과금이 부과 됩니다.
- 라. 관련법률
- 1)도난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경우 형법 제 329조와 형법 제 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.
- 2)발급받은 시즌권의 위,변조 행위를 제공하거나, 위,변조된 시즌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 217조에 의거 유가증권 위조등에 저촉되며, 적발된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, 민.형사상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.
- 3)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(시즌권)등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민법 제741조,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.

#### 제6조 (시즌권 부정사용시 처벌 규정)

- 가. 시즌권 구입자가 제 3자에게 당해 시즌권을 약관상 정상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그 제 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시
- 1)시즌권 폐기
- 2)이용자 이용한 해당 시즌권종의 정상요금 벌과금 부과
- 나. 제 3자가 분실, 절취, 횡령, 강취, 사취 등을 통해 습득한 시즌권을 이용한 행위 1)시즌권 폐기
- 2)시즌권 구입자(기명인) 분실, 도난 신고후 제 3자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나, 신고전에 제 3자가 이용하다가 적발 되었다면 미신고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시즌권 폐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3)이용자 - 이용한 해당 시즌권종의 정상요금 벌과금 부과, 시즌권 구입자와 합의
- 다. 시즌권의 재발급 받은후 기존 시즌권 사용시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신/구 시즌권 모두 회수,말소 처리 됩니다.
- 라. 시즌권 위, 변조 적발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
- 마. 위 처벌 규정에 대해 손해 배상을 인정 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 인계

#### 제7조 (시즌권 재발급)

- 가. 시즌권의 재발급은 훼손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거나 분실 시에만 가능하며 재발급 허용은 2회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- 나. 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게 유선/현장 신고를 하여야하며 시즌권담당부서에서 서면 (소정양식)을 작성후 재발급 처리하게되며 수수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다. 훼손 또는 분실에 의한 재발급수수료는 20,000원이며 분실된 시즌권은 사용 정지되며,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경우에도 해당 시즌권의 사용은 불가하며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.
- ※ 단.분실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분실 신고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됩니다. (운영 시간외 재발급 불가)
- 라.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시에는 시즌권 담당부서에 반납하여 주시고, 회수된 시즌권에 대해서는 폐기합니다.

#### 제8조 (시즌권의 양도양수)

- 가.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최초 구입자 기준 1회에 한하며 수수료 납입 및 발급된 시즌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  - 양도양수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도양수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- ※ 시즌권 양도양수는 대리 신청 불가 합니다. ※
- 나. 양도양수 수수료는 4만원이며, 양도양수 기간은 하기일내에만 가능합니다.

(전일권: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)

- 위 내용과 같이 기본 사용기간 이후에는 시즌권 양도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.
- 다. 양도양수자의 경우 차기 시즌권 구매시 연속 구매(년차)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.

- 라. 시즌권 상품 중 경품, 무료교환권, 판촉행사용(동호회,특가상품등)이나 이월 된 시즌권은 양도양수 불가 합니다. 단 해외 이민, 임신, 유학, 군 입대, 신체장애(3주이상)등 사유로 인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예외로 양도/양수 가능하며, 시즌권 자는 반드시 양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당사에 제출 해야 하며, 서류 미 제출시 불가 합니다 ※ 위(나항) 기간 하기 일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마. 시즌권의 분실시에는 양도 불가합니다. (재발 급 후 양도양수 신청 가능)
- 바. 사업자(지산리조트)를 통해서만 양도양수가 가능하며, 개인간 임의로 행해지는 양도양수로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
- 사. 온라인 특가 시즌권은 특별할인 상품으로 3주이상의 부상 및 이주,이민,입대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양도불가 합니다.

#### 제9조 (시즌권의 환불)

- 가. 시즌권의 환불은 가능하며 개장전후의 환불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.
- 나. 시즌권 환불 시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, 반드시 발급받은 시즌권을 반납 또는 폐기 해주셔야 합니다. (불법 사용 적발 시 벌과금이 부과 됩니다.)
- 다.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)개장전 환불: 위약금(시즌권 구매가격의 10%) 공제후 환불
- 2)개장후 환불: (전일권: 개장일~60일이내)에만 가능합니다
  - 환불금 = 구매가 위약금(시즌권 구매가격의 10% ) 사용금액(시즌 일할 계산액 \* 개장후 영업일수)
- ※ 환불 기간중 개장후로부터 10일이내 환불의 경우 사용금액은 영업일수의 리프트 6시간권 정상요금 적용
- ※ 일할계산 = (전일권: 해당종권 정상금액 / 60일)
- ※ 개장후 영업일수 = 시즌 개장일 ~ 청구일
- 3)개장후 미수령자 환불 : 위약금(시즌권 구매가격의 10%)공제후 환불
- 라. 시즌권 구입후 수령하지 않은 시즌권 및 연기 신청 시즌권은 다음해 판매되는 시즌권 판매가 와의 차액을 지불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※ 시즌권 연장 기간은 다음 해 까지이며 이후 환불,이월 되지 않습니다.
- 마. 2인 이상의 공동구매 기획 상품의 경우 개별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단, 구성원의 차액 지불시 가능합니다.
  - ※ 환불 입금 기간 : 신청 접수 날 부터 7~14일 소요 됩니다. ※

#### 제10조 (변경승인)

사업자는 서비스 및 약관의 변경이 있을시 그 내용을 사업자의 홈페이지 게재나 e-mail 발송 등을 통해 적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공지하며, 이용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을시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## 제11조 (면책)

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(리프트 고장 및 정전, 정부정책, 전염병,감염병, 등 관련명령, 집합금지, 이용제한, 시설 폐쇄 등)

# 제12조 (가입 거부)

시즌권 구매 신청 후 라도 신청자의 결격사유(과거 시즌권 또는, 리프트권 및 회원권의 불법매매, 양도, 대여, 회사의 명예 손상 및 업무방해 등)의 경우 시즌권의 발급은 거부 될 수 있습니다.

# 제13조 (기타)

- 가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
- 나.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사업자의 관할 지역 법원으로 정한다.
- 다. 본 시즌권 구입시 당사에 제출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 당사가 필요시 홍보자료(e-mail,sms등)로 사용할 수 있는것에 동의 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라. 시즌권 구입시 주민등록번호 도용, 문서(등본,재직증명서, 등) 위조 시 민·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마. 본 약관은 판매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, 시즌권 발급과 미발급의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